

해외여행자보험 상품 설명서

1. 보험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제한

- 1)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인 자는 상해, 질병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에 의거 담보되지 않습니다.(계약의 무효)
- 2) 일반여행, 순수관광 및 이와 유사한 여행이 아닌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이 높은 레저활동에 참가하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나. 상품의 특이사항

- 1) 순수보장성 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2)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3개월 이하이며, 보험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가. 보험금 지급사유

● 기본계약

| 구 분 | 보험금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사망후유장해 | 여행도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사망시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전액 ☞ 후유장해시 장해급수별 가입금액 3~100% 지급 |

● 선택계약

| 구 분 | 보험금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 질병사망 및 80%이상 질병후유장해시 보험가입 금액 전액 | ☞ 질병 사망시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전액 ☞ 80%이상 후유장해시 고도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
| 해외의료비 |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 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한도내 치료비 지급 실비 전액 |

| | | | | |
|---------------|---------------|-----------|---|--|
| 상해 의료 비 | 국내 의료 비 | 상해 급여 |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비급여 제외) |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입원제비용의 80%, 비급여병실료의 50%(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함),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중 본인 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병의원에따라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또는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금액 |
| | | 상해 비급여 |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비급여 제외) |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입원제비용의 70%,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 금액 10만원을 한도로함), 통원 1회당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의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질병 의료 비 | 해외의료비 | | 해외여행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 가입금액 한도내 치료비 지급 실비 전액 |
| | 국내 의료 비 | 질병 급여 | 해외여행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비급여 제외) |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입원제비용의 80%, 비급여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함),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중 본인 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병의원에따라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또는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 | | |
|-----------------------|---------------|---|--|
| | 질병 비급 여 | 해외여행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비급여 제외) |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 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 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입원제 비용의 70%,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 금액 10만원을 한도로함), 통원 1회당 외래제비용,외 래수술비, 처방조제비의 3만원과 보 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3대 비급여(국내 의료비) |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 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치료 및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등을 받은 경우 보상 | ☞ 피보험자가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입원 또는 통원하여 의료 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도수치료, 체 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경우계약 일 또는 매년 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주사료 는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자기 공명영상진단은 300만원 이내에서 보장하며 각 공제금액은 1회당 3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
| 식중독입원일당 (2일이상)/일시금 | | 해외여행도중 음식물 섭취로 인해 중독(식중독) 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 함)에 2일이상 계속입원하여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 해외여행 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 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결과 로 병원에 2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
| 특정전염병치료비 |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 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함 ▶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제 1,2,3군의 질병을 말합니다. | ☞ 진단금 20만원 |
| 배상책임 | | 여행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금액 및 소 송비용 등 지급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

| | | |
|------------------|---|--|
| 휴대품손해 | 여행중에 우연한 사고로 휴대하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에 있는 휴대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난, 침수, 파손 등 단, 분실은 제외) | ☞ 가입금액 한도내 수리비나 대체비 등 실손해액 지급(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보험의 목적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보험금 20만원 한도) |
|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 송환비용 | <p>아래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 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여행중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고 일로부터 1년내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p>☞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압비)</p> <p>*이 담보에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보험금 지급시 1회 보험사고에 대해 10만원 차감 후 자기부담률 10%를 공제합니다.</p> |
| 항공기 납치 | 여행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된 경우 | ☞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p>아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결항공편이 결항된 후 4시간 내에 대체 항공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②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과적으로 탑승이 거부된 후 4시간 내에 대체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③ 수하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④ 수하물이 손실되거나 24시간내에 수화물이 도착하지 못한 경우 <p>①②항에 해당할 경우 출발 또는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유효한 아래의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 간식 또는 전화비용 -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수하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비상 의복 및 필수품의 구입비용 <p>(단,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p> <p>③에 해당할 경우 비상 의복과 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p> | ☞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 |
|----------------------------|--|--|
| <p>여행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p> | <p>아래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여행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부담한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가 사망한 경우 -지진, 분화, 해일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p> | <p>☞여행중단후 귀국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기지불한 항공 또는 선박운임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운임비용 ☞여행중단후 귀국으로 인해 기지불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2박이내의 숙박비</p> |
| <p>해외여행중 여권 분실 후 재발급비용</p> | <p>해외여행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을 보상합니다.</p> | <p>☞여행증명서 발급비용 및 여권재발급이용이란 여행증명서 및 여권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p> |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산출 기초 및 보험료 예시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 등을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나. 보험료 예시

(산출 기준 : 보험기간 5일/남자/35세 기준/국내의료비 포함)

| 담 보 내 용 | | | 보장금액 | 보 험 료 | |
|---|----|-----|---------------|--------|---------------|
| 상해 사망/ 후유장해 | | | 200,000,000 | 9,850원 | |
| 상해후유장해 | | | 200,000,000 | | |
| 질병사망 | | | 20,000,000 | | |
| 의 료 비 | 상해 | 국내 | 급여(자기부담금 20%) | | 10,000,000 |
| | | 국내 | 비급여(자기부담금30%) | | 10,000,000 |
| | 해외 | 의료비 | | | 20,000,000 |
| | | 질병 | 국내 | | 급여(자기부담금 20%) |
| | 국내 | | 비급여(자기부담금30%) | | 10,000,000 |
| | 해외 | 의료비 | | | 20,000,000 |
| 특약 비급여 | | | 3,500,000 | | |
|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 | 20,000,000 |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점당 20만원) | | | 1,000,000 | | |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7일이상/자기부담금10만원,자기부담률 10%) | | | 10,000,000 | | |

| | |
|--------------------|---------|
| 여행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 200,000 |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200,000 |
| 식중독 입원(2일이상) / 일시금 | 200,000 |
| 특정전염병치료비 | 200,000 |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실손보상 |
| 항공기 납치일당(1-20일한도) | 70,000 |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청구로 보험계약을 해지시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미경과 보험료 산출기준

-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을 환급
-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를 환급

5. 여행보험에 관한 Q&A

Q) 자살, 자해 등의 보상여부?

A)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Q) 사망시 보험금 수령권자는?

A)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별도 지정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미지정시는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Q)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한 보험가입 가능여부?

A)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Q)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다만, 의료비 및 실손담보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Q)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의 보상여부?

A)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분실은 제외)

- ▶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여행자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